

『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9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지영목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,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(안 제4조)
-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감정노동자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1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○ 본 「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 은,

-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,
-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노동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